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10. 15 선고 2020가단321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A중중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10. 1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부동산 지분 1/5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2021. 7. 14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지연

별지